

2016년도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실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9항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67, 2014.12.31)에 의거하여 2016년도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를 시행합니다.

I. 정기 정도관리

- 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2015년 정기정도관리 미참여기관 및 신규지정기관 118개소[첨부 1]
 - 2016년 수시정도관리를 받은 기관(신규지정기관 및 전회 부적합기관)은 평가에서 제외
- 평가방법 : 자료평가
- 실시일정

내용	일정
신청접수, 검진사업장 명단 접수	6. 10 - 6. 30
평가대상사업장 선정 및 통보	7. 4
자료접수	7. 22 마감
자료평가	7. 25 - 10. 31

- 신청방법 : www.k2b.kosha.or.kr에서 업무관리자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해당 페이지 접속 ([첨부 2] 참조)

※ 자료평가 안내

1. 자료평가를 신청하고 [자료평가용 사업장 명단] 서식은 (<http://k2b.kosha.or.kr>)의 [업무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신 후 별도 메일(yoongjung@kosh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평가용 사업장 명단] 작성 요령

- [2015년 10월 1일 - 2016년 5월 31일] 기간 중 완료된 소음 특수건강진단대상 사업장명, 검진완료일, 근로자 수, 소음특수건강진단 실시자 수, 2차 실시자 수 등을 빠짐없이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의 서식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사업장 명단 파일은 ‘기관ID_기관명’의 형식으로 저장해 주십시오.
예) qa500_안전보건연구원.xls
- 제출하신 자료 중 무작위 선정한 사업장의 소음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해 자료평가가 시행됩니다.
- 배치전 검진은 제외됩니다.

2. 자료제출 대상 사업장명단은 선정완료 후 별도 안내됩니다.
3. 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신 명단과 평가용 자료의 내용이 다를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4. 자료평가 기준은 [첨부 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하반기 교육

▪ 대상자

- 청각검사자 초급교육 : 교육 및 청력검사 경험이 없는 자
- 청각검사자 고급교육 : 신규(초급) 및 보수(중급) 교육 수료자 또는 청력검사 경험 3년 이상인 자
- 교육참가자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4에서 정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특수건강 진단 청각학적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실시일정

내용	일정
일정안내 및 신청접수	7. 11 - 7. 20
청각검사자 초급 3차 교육	7. 25 - 7. 26
청각검사자 초급 4차 교육	7. 28 - 7. 29
청각검사자 고급 1차 교육	8. 12
교육 결과 보고 및 수료증 배포	8. 31

▪ 교육장소

- 청각검사자 초급교육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관 한림홀
- 청각검사자 고급교육 : 대전보건대학교 9동(강의동) 제1계단 강의실

▪ 신청방법 : www.k2b.kosha.or.kr에서 업무관리자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해당 페이지 접속 ([첨부 2] 참조)

▪ 상반기 교육에 대한 재시험을 원할 경우 신청기간 내에 유선으로 신청(052-7030-883)

▪ 하반기 청각검사자 중급교육 및 청각판정교육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청각검사교육 안내

1. 본 교육은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신규지정신청의료기관의 청각검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자율참가기관의 신청자는 접수 전 교육 담당자에게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초급교육** 참가 가능 인원은 하반기 3,4차를 통틀어 **기관당 1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되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3. **고급교육** 참가 가능 인원은 **기관당 최대 2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되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4. 참가 가능 정원을 초과하여 신청될 경우, 초과된 인원에는 신청이 자동취소됩니다.
5. 청력정도관리 검사교육은 자율교육으로 운영됩니다.
6. 교육 참가자가 없을 경우 신청하지 마십시오. 교육신청 후 불참할 경우도 신청으로 처리되어 차후 교육에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청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신청하였으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즉시 「수정」 또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과 「취소」는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연구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교육참가자 명단은 별도 통보해드리지 않으며 교육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청각검사교육은 교육 종료 후 시험 평가가 있으며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교육생에 대해**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10. 교육일자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일자 변경 시 별도 안내됩니다.
11. 교육 참가비는 없으며 식사 및 숙박은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12. 주차료 지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각검사 초급교육

일자	시간	내용
1일차	09:30 - 10:00	등록 및 인사
	10:00 - 10:50	청력정도관리 개요 및 관련 법규
	11:00 - 11:40	기초음향학
	11:50 - 12:30	청각기관 해부생리
	12:30 - 13:30	중식
	13:30 - 14:00	청력검사실의 배경소음과 청력검사기의 음향보정
	14:10 - 14:50	소음성 난청 개요
	15:00 - 15:50	순음청력검사 이론 및 실제
	16:00 - 16:50	중이검사 이론 및 실제
	17:00 - 17:50	음차폐 검사 원리와 적용
2일차	10:00 - 10:50	시험평가
	10:50 - 11:00	휴식
	11:00 - 11:20	조 분배 및 실습 안내
	11:20 - 12:30	순음청력검사/음차폐/중이검사 실습
	12:30 - 13:30	중식
	13:30 - 14:40	순음청력검사/음차폐/중이검사 실습
	14:40 - 14:50	휴식
	14:50 - 16:00	순음청력검사/음차폐/중이검사 실습

- 청각검사 고급교육

시간	내용
09:30 - 10:10	등록 및 인사
10:10 - 11:10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이해
11:10 - 11:30	휴식
11:30 - 12:30	소음성 난청과 직업성 난청
12:30 - 13:30	중식
13:30 - 14:30	청력정도관리 자료평가 사례
14:40 - 15:40	중이검사 이론 및 실제(PTA와 Tympanometry 사례 중심)
15:40 - 16:00	휴식
16:00 - 16:40	시험 평가

III. 정도관리 및 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

- 청력정도관리(자료, 방문)평가 및 교육의 신청과 결과확인이 별도의 홈페이지(K2B)를 통해 진행되며, 청력정도관리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http://k2b.kosha.or.kr>를 클릭하여 변동내용이 있는지 확인 후 수정을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통보서 및 고용노동부 보고는 k2b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관리 평가는 자료평가를 원칙으로 수행하며 방문평가는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

기관 또는 검진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교육은 자율교육으로 운영되며 수료 시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교육 관련 항목에 반영됩니다.
- 기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검사교육이 기관평가에서 개인평가로 전환된 2002년부터 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4]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에 위배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IV. 정도관리 주관부서 및 담당자 안내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 청력 정도관리 : 052-7030-883(최윤정 대리)
- 진폐 정도관리 : 052-7030-881(고경선 연구원), 052-7030-887(박재오 연구원)
- 분석 정도관리 : 052-7030-873(이미영 연구위원), 052-7030-885(이혜지 대리)

2016년 정기 청력정도관리 대상 기관

연번	ID	기관명	연번	ID	기관명
1	qa002	(의)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51	qa118	터직업환경의학과의원
2	qa006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52	qa119	삼천포제일병원*
3	qa009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53	qa121	영도병원*
4	qa011	구미강동병원	54	qa122	오산한국병원
5	qa012	금강의원	55	qa123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6	qa014	김병원	56	qa136	대한산업보건협회 천안산업보건센터
7	qa015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57	qa138	(의)효심의료재단 용인서울병원
8	qa019	가톨릭의원	58	qa143	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9	qa022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산업보건센터	59	qa149	아산제일의원
10	qa023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60	qa150	(의)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11	qa025	대한산업보건협회 창원산업보건센터	61	qa154	JS메디칼 내과외과정형외과의원
12	qa026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산업보건센터	62	qa158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13	qa027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산업보건센터	63	qa183	거봉의료재단 거제백병원
14	qa028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산산업보건센터	64	qa190	강북삼성병원 수원의원
15	qa030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65	qa199	(재)한국의학연구소 경기의원
16	qa031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산업보건센터	66	qa206	온누리병원
17	qa032	(주)대한항공 김해부속의원	67	qa208	(재)한국의학연구소 부산의원
18	qa033	(의)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68	qa215	미래산업보건의료재단 미래건강병원*
19	qa034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69	qa217	한국의학연구소 강남의원
20	qa036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70	qa218	(의)청연의료재단 순천제일병원
21	qa038	(의)성균관의대 삼성창원병원	71	qa221	검단 탑 병원
22	qa040	학교법인 목포중앙병원	72	qa224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3	qa041	목포한국병원	73	qa236	인천광역시의료원
24	qa045	부천대성병원	74	qa239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산업보건센터
25	qa047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75	qa245	(의)백성의료재단 안중백병원
26	qa050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76	qa246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
27	qa055	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	77	qa251	대한산업보건협회 남부산산업보건센터
28	qa057	순천향대학교 환경산업의학연구소	78	qa255	(의)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
29	qa058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79	qa261	좋은삼선병원
30	qa060	아주대학교의료원	80	qa268	조선대학교병원
31	qa061	(재)아주산업의학연구소	81	qa280	의료법인현경의료재단 광양서울병원
32	qa063	(재)안동성소병원	82	qa281	여천전남병원
33	qa069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	83	qa283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34	qa070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84	qa284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 태평로의원
35	qa074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	85	qa28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36	qa075	울지대학병원	86	qa286	한국의학연구소 대구분사무소 부설의원
37	qa079	인하대병원	87	qa287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38	qa080	전남대학교병원	88	qa290	(의)동하의료재단 한마음창원병원*
39	qa081	정읍아산병원	89	qa293	온누리수의원*
40	qa083	진주고려병원	90	qa334	메디인병원*
41	qa085	(의)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91	qa335	경기환경복지재단 더메디필내과의원*
42	qa087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속의원	92	qa336	온사랑의원*
43	qa089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	93	qa338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웅상중앙병원*
44	qa094	(재)한국의학연구소 한국중부의원	94	qa339	대자인병원*
45	qa096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95	qa340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46	qa098	한성의원	96	qa342	서울의과학연구소 강남하나로의원*
47	qa102	울산 굿모닝병원	97	qa343	비타민한방병원*
48	qa103	시화종합병원	98	qa344	버티병원*
48	qa111	(의)진성 연세모두병원	99	qa345	천안우리병원*
50	qa112	(의)보원의료재단 김해중앙병원	100	qa294	울산터의원

연번	ID	기관명	연번	ID	기관명
101	qa295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	111	qa322	양정분산부인과의원*
102	qa301	우리원영상의학과의원*	112	qa323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103	qa329	서울메디케어의원*	113	qa324	상계백병원*
104	qa347	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114	qa325	의료법인 정선의료재단 은중합병원*
105	qa348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115	qa326	의료법인 근원의료재단 경산중앙병원*
106	qa349	이천파티마병원*	116	qa327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107	qa350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	117	qa328	의료법인 창덕의료재단(분당지점)*
108	qa351	중앙의원*	118	qa353	강미정연합내과의원*
109	qa352	의료법인 베데스다병원*			
110	qa317	의료법인 성세의료재단 성민병원*			

* 2015년 신규지정기관

※ 붙임 3.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정도관리 신청 방법

- 신청기간은 2016년 6월 10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 <http://k2b.kosha.or.kr>로 접속해서 청력정도관리 업무관리자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특수건강진단기관 청력정도관리 접수 및 신청화면을 조회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기관은 정도관리담당자에게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yoonjung@kosha.or.kr 또는 전화 052-7030-883).
- 진폐정도관리와 청력정도관리 신청 화면은 다르오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공단 K2B 홈페이지 <http://k2b.kosha.or.kr> 접속

(회원가입 안내공문에 따라 청력정도관리 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이 K2B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2. 메인화면 우측상단 나의업무 아래 청력정도관리 실행 후 좌측 메뉴 청력정도관리
리 - 일정조회 및 신청 선택 실행



K2B
KOREAN RECORDS MANAGEMENT & SECURITY ASSOCIATION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예방기관의 김은주님

원격채우 | 로그인

K2B 서비스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업무

이용안내

나의업무

회원관리

청력정도관리

특수건강진단기관 능력정도관리 > 일정조회 및 신청

검색조건

업무구분

-전체-

년도

2012

차수

잔행일정

____-__-__ ~ ____-__-__

신청일정

____-__-__ ~ ____-__-__

조회

일정정보

일정			신청기간	신청/정원	잔행상황	신청상황
청각검사교육	신규 3차	2012.03.12~2012.03.13	2012.02.09~2012.02.17	0/60	잔행예정	미신청
청각판정교육	신규 1차	2012.03.12~2012.03.12	2012.02.09~2012.02.17	0/30	잔행예정	미신청
청각검사교육	신규 2차	2012.03.08~2012.03.09	2012.02.09~2012.02.17	0/60	잔행예정	미신청
청각검사교육	신규 1차	2012.03.05~2012.03.06	2012.02.09~2012.02.17	0/60	잔행예정	미신청
기관평가(임시)	방문평가	2012.02.20~2012.04.30	2012.02.06~2012.02.17		잔행중	미신청

3. 우측 조희단추를 실행하면 하단에 분야별 기관평가 일정 리스트가 보임

[원격제어](#) | [로그아웃](#)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예방기관의 김은주님



K2B 서비스 소개 •
 마이페이지 •
 나의업무 •
 이용안내

나의업무

특수건강진단기관 경력증도관리 > 일정조회 및 신청
❏ 조회

② 검색조건

업무구분	-전체-	년도	2012	차수		조회
진행일정	-----	~	-----	신청일정	----- ~ -----	

③ 일정정보

일정			신청기간	신청/정원	진행상황	신청상황
청각검사교육	신규 3차	2012.03.12~2012.03.13	2012.02.09~2012.02.17	0/60	진행예정	미신청
청각관정교육	신규 1차	2012.03.12~2012.03.12	2012.02.09~2012.02.17	0/30	진행예정	미신청
청각검사교육	신규 2차	2012.03.08~2012.03.09	2012.02.09~2012.02.17	0/60	진행예정	미신청
청각검사교육	신규 1차	2012.03.05~2012.03.06	2012.02.09~2012.02.17	0/60	진행예정	미신청
기관평가(임시)	방문평가	2012.02.20~2012.04.30	2012.02.06~2012.02.17		진행중	미신청

4. 원하는 일정을 더블 클릭하여 신청자 정보를 입력한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산업안전연구원

안전보건공단 K2B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원격재어](#) | [로그아웃](#)

K2B 서비스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업무
이용안내

나의업무

■ 일정조회 및 신청

■ 기관정보

일정	청각검사교육	신규 2차	진행일자	2012.03.12~2012.03.13
기관명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할지방관리서	충북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기관구분	특수건강진단기관		대표자명	박성선
우편번호	403711		주소	인천 부평구 구산동 34-4
전화번호	032-5100-835		Fax	032-518-0862

■ 신청자정보

이름			
맨허	선택-	맨허번호	
기타자격			

5. 신청결과 확인, 수정, 신청취소 방법

좌측하단 청력정도관리 하위메뉴 신청결과확인·수정을 선택하고 우측 조회단추 실행 → 신청한 분야별 기관평가 제목을 더블클릭하여 신청결과 확인 → 신청내용 수정 시에는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수정 단추실행, 신청 취소는 신청취소 단추 실행

※ 다른 분야의 수정 또는 신청취소 시 목록단추 실행 후 각 분야별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

2016년 특수건강진단 청력정도관리 자료평가 방법 및 기준

1. 자료제출 내용

가. 자료제출 대상 사업체 명단 선정 및 제출

- ① 연구원에서 지정한 기간(2015.10.1~2016.5.31) 중 완료된 사업체 명단을 제출
- ② 연구원에서 평가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통보하면 해당 사업체의 평가 자료를 2016년 7월 22일까지 제출

나. 제출 자료

- ① 해당 사업체의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사본
- ② 해당 사업체의 소음특수건강진단 개인표 사본(1차 검사 결과가 정상인사람도 포함)
- ③ 소음특수건강진단 대상자중 2차 검사 대상자의 순음청력검사자료(audiogram) 사본
- ④ 사후관리 소견서, 종이검사 결과, 문진표 등 판정 근거 자료 사본(필요시)
 -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개인표, 청력도 외 판정에 반영된 자료가 있을 경우 기관 자율적으로 추가 제출
- ⑤ 최근 1년 이내의 청력검사기 음향보정점검 자료 사본
 - 기관명, 점검일자, 모델명, 장비고유 일련번호(serial number), 헤드폰 타입, 헤드폰 일련번호(좌우측 별도), 보정기관, 보정에 사용된 장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함

2. 청력정도관리 제출자료 평가기준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기본	가중치	배점
①	2차 건강진단 대상자의 선정과 실시 적정성	10	2	20
②	좌우측의 주파수별 기도 및 골도 검사 실시 적정성	10	1	10
③	기도 및 골도 청력검사의 적정성	10	1	10
④	적정한 기도 음차폐 검사	10	1	10
	적정한 골도 음차폐 검사	10	1	10
⑤	난청의 유형에 따른 판정의 적정성	10	3	30
⑥	최근 1년간 음향보정점검 실시 여부	10	1	10
총점				100

나. 점수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 점	비 고
①~⑤	해당 평가 항목의 100%	10	※ 평가항목마다 「평점×가중치」 방식으로 계산 예시) '2차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에서 75% 획득한 경우 - 평점 : 6점 - 가중치 : 2 - 획득점수 : 6×2 = 12 점
	해당 평가 항목의 80% 이상	8	
	해당 평가 항목의 60% 이상	6	
	해당 평가 항목의 40% 이상	4	
	해당 평가 항목의 20% 이상	2	
	해당 평가 항목의 20% 미만	0	
⑥	최근 1년간 음향보정점검 실시한 경우	10	※ 제출자료 확인
	최근 1년간 음향보정점검 미실시한 경우	0	

* 최종적으로 총점이 60% 미만일 경우 『부적합』 판정

다. 총점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

총점의 60%이상 취득 시 적합 판정 하나 아래 각 항에 해당 될 경우 점수에 상관 없이 부적합 또는 감점 처리함

- ① 검진완료사업장명단을 임의로 선택하여 제출하거나 평가자료를 조작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
- ② 개인표 사본 또는 청력도(audiogram)를 미제출 하거나 평가자가 정확한 평가를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미제출 할 경우 부적합 판정
- ③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더라도, 판정의 적정성 항목에서 2차 검사 대상자 중 50% 이상 부적정 평가시 부적합 판정
- ④ **D1대상자를 D1으로 판정하였는가를 확인하여 50%이상 부적절한 판정시 판정의 적정성은 평가점수보다 한 단계 낮게 평가**
- ⑤ 1차 검사에서의 청력역치에 따른 적절한 2차 대상자의 선정에서 50%이상 문제가 있다면 판정의 적정성은 평가점수보다 한 단계 낮게 평가
- ⑥ 기도 또는 골도 음차폐를 미실시 또는 미흡하여 평가점수가 0점일 경우 판정의 적정성은 평가점수보다 한 단계씩 낮게 평가

라.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① 2차 건강진단 대상자의 선정과 실시 적정성
 - 1차 소음특수건강진단 순음기도청력검사에서의 청력역치에 따른 2차 건강진단

대상자의 선정과 실시

- 어느 하나라도 2,000Hz 30dBHL 이상 or 3,000Hz 40dBHL 이상 or 4,000Hz 40dB HL 이상 보이는 경우 정밀청력검사(2차)를 실시하여야 함
- 2차 건강진단 대상자율(%)

② 좌우측의 주파수별 기도 및 골도 검사 실시 적정성

- 좌우측의 주파수별(최소한 500, 1,000, 2,000, 3,000, 4,000, 6,000 Hz) 기도 및 골도 검사 실시

③ 기도 및 골도 청력검사의 적정성

- 골도 청력역치 > 기도 청력역치의 여부
- **청력역치가 20 dBHL 이상인 해당 개별 주파수에 대하여 골도 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하여야 함**

④ 적정한 기도 및 골도 음차폐(masking) 검사

- 기도 음차폐 : 양측 귀의 기도청력역치가 1A(40dB) 이상 차이나는 경우, 또는 검사 귀의 기도청력역치와 비검사귀의 골도청력역치가 1A(40dB) 이상 차이나는 경우 기도음차폐 실시
- 골도 음차폐 : 동측귀의 기도역치와 골도역치가 15 dBHL 이상 차이나는 경우 골도차폐 실시.
- 음차폐 검사 시 차폐범위기재 확인.
- **차폐범위는 검사 반대측 귀, 즉 차폐음을 주는 귀 쪽에 기재**
- 차폐의 전체범위를 표시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최대값 또는 최소값만 표기할 경우 해당주파수의 음차폐검사를 적절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사용되는 장비의 프로그램상 최대 또는 최소값만 표시되는 경우는 반드시 수기로 전체범위를 기록해야함
- 차폐검사를 하였을 경우 차폐 전 역치는 표기하지 않아도 됨

⑤ 난청의 유형에 따른 판정의 적정성

- 건강 관리 구분

건강관리구분		판정기준
A		정상청력,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자
C	C₁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요관찰자) 1) 청력손실이 있고 2)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3) D1에 해당되지 않고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예) PTA : 정상(20dBHL이하)이고, 4kHz에서 40dBHL 이상인 경우 등
	C₂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 1) 일반질환에 의한 난청이 의심되는 자(요관찰자)
D	D₁	직업성질환의 소견이 있는자(직업병유소견자) 1) 기도 순음청력검사상 4kHz의 고음역에서 50 dBHL 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삼분법(500(a), 1000(b), 2000(c))에 대한 청력손실정도로서 (a+b+c)/3 평균 30 dBHL이상의 청력손실이 있고 2)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D₂	일반질환의 소견이 있는자(일반질환유소견자) 1) 일반질환에 의한 난청이 발견된 자(요관찰자) 예) 청각장애, 만성중이염 등
R		일반건강진단에서 질환 의심자(제2차건강진단대상)

－ 난청의 유형 판정의 적정성 : 전음성, 감각신경성, 혼합성 난청

※ 제출자료만으로 평가되므로 사후관리 소견서, 중이검사 결과, 문진표 등 판정 근거 자료 사본 확인 제출 필수

－ 1차에서 U 판정의 경우 : 사유 미기록한 경우 2차 검사 미실시로 판정

⑥ 최근 1년간 음향보정점검 실시 여부

－ 제출 자료의 확인 : 최근 1년 이내의 청력검시기 음향보정점검 자료 사본

－ 기관명, 점검일자, 모델명, 장비고유 일련번호(serial number), 헤드폰 타입, 헤드폰 일련번호(좌우측 별도), 보정기관, 보정에 사용된 장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함